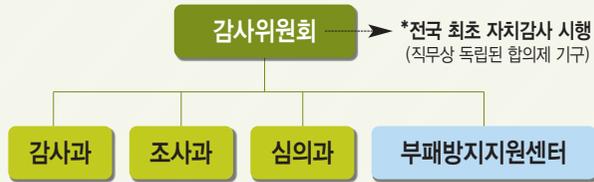


감사위원회란?

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06.7.1. 중앙 행정 기관의 외부감사를 배제하고 제주 자체적으로 감사,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도민 자치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.



감사과

- 감사위원회 운영/감사계획 수립
- 감사대상기관/중앙행정기관 의뢰사항 감사

조사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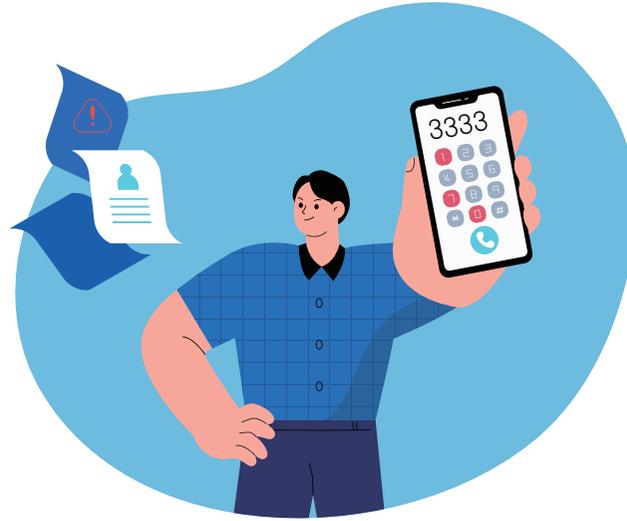
- 공직기강 감찰 및 공무원 비위 등 조사·처리
- 언론보도, 특정분야에 대한 조사·처리

심의과

- 감사위원회 의사운영·감사결과 재심의 처리
-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운영 및 감사·조사활동에 따른 법리검토

부패방지지원센터

- 민원 및 공익제보 접수 창구 운영
- 도민감사관제도 운영
- 도민대상 청렴 교육·홍보



지켜드리고 지원해 드리겠습니다.
안심하고 제보하세요!

공익제보 상담전화
064)710-3333

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
부패방지지원센터

우)63565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(법환동)
홈페이지 <http://audit.jeju.go.kr> Fax 064)710-6199



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
부패방지지원센터

● 공익제보란? (공익신고 + 부패신고)

제주특별자치도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신고와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통칭함

● 공익신고 (민간분야 공익침해 신고)

-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와 관련된 도민의 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이익, 공정경쟁, 이에 준하는 **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6대분야 관련 471개 법률 위반 행위**

* 2021년 4월 20일부터 대상 법률 467개
→ 471개 대폭 확대 시행

● 부패신고(공공분야 부패행위 신고)

-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한 권한 남용 및 **위법행위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**
-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집행, 재산관리, 계약과정에서 위법행위로 **도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**
- 위에 해당하는 **행위나 은폐를 강요, 권고, 유인하는 행위**



● 공익제보 어디에?

- **상담** 064-710-3333
- **인터넷** 감사위원회 홈페이지(<http://audit.jeu.go.kr>)
- **팩스** 064-710-6199
- **방문·우편**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37 (법환동) 감사위원회

● 공익제보 어떻게?

- 제보자 인적사항, 위법행위를 하는 자, 공익 제보 내용, 공익제보 취지·이유 등을 기재 후 **증거 첨부하여 실명·문서 접수**

※ 신분보호담당관을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● 공익제보 처리절차는?

○ 공익제보 접수

- ① 신고서 인적사항, 신고대상·증거 등 확인
- ② 공익제보 접수
- ③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

○ 공익제보 여부확인

- 471개 법률의 벌칙 및 행정처분 대상 여부 확인
- ※ 공익제보가 아닌 경우 일반민원으로 접수

○ 조사 및 처리

- 담당기관 조사 :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 조치
- 해당기관 이송 : 제보내용이 이송 필요한 경우 신고자 동의를 얻어 관련 해당기관으로 이송

● 공익제보자 보호는?

- **철저한 비밀보장**
공익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 보장, 관련 정보 비공개
- **보호 및 신분보장**
제보자 등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 불가 등
- **신변보호**
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변 보호 요청

● 공익제보자 보상 및 지원은?

- **보상금 (최대 30억 원)**
도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·증대를 가져온 경우
- **포상금 (최대 2억 원)**
도에 재정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,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
- **구조금 (치료비, 이사비 등)**
공익제보자 등이 공익제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

